

| 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주)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재형아세안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재형아세안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삼성재형아세안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4. 작성기준일 : 2017. 3. 9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7. 3. 15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모집(매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요약정보

제1부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마. 특수형태
3. 모집 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나. 종류형 구조
 - 다. 모자형 구조
 - 라. 전환형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 대상
 - 나. 투자 제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나. 수익 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 가. 매입
- 나. 환매
- 다. 전환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나. 과세

제3부 |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 가. 요약 재무정보
- 나. 대차대조표
- 다. 손익계산서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제4부 |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제5부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 나. 잔여재산분배
- 다. 장부· 서류의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청구권
- 라. 손해배상책임
- 마. 재판관할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증권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 해지
- 나. 임의 해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 보고서
- 나. 수시 공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른 재형저축으로서, 일부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 후 7년 이전에 해지·양도하거나 환매시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9.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이 도래하는 때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해지·양도하거나 환매시 연장한 기간 및 연장 이전 7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7.03.09)

삼성재형아세안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펀드 코드: AG067)

| 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 | | | |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삼성재형아세안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빌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 |
|-------------|---|
| 투자자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
|-------------|---|

| | |
|--------------|--|
| 집합투자기구 특징 |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및 아세안(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그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
| 집합투자업자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전화: 080-377-4777, 콜센터: 080-377-4777) [위탁운용사 :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업무위탁범위 운용업무/운용지시업무/단순매매주문업무 등] |
| 모집[판매] 기간 | 계속하여 모집 가능 |
| 효력발생일 | 2017. 3. 15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

| | |
|---|--|
| 명칭 | 삼성재형아세안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
| 판매수수료 | - |
| 환매수수료 | - |
| 판매 보수 [연, %] 운용 등 기타 총보수 · 비용 합성 총보수 · 비용 | 0.5% |
| 운용보수 : 0.59% 신탁보수 : 0.05% | 0.0539% |
| 1.1939% | 1.1939% |
| ※ 주석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지급시기 :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총보수 · 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기타비용은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합성총보수 · 비용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편투자신탁(모투자신탁 포함)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하여 산출한 편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수 및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 | |
|-------|--|---|---|
| 매입 방법 | · 17시 이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 · 17시 경과 후 : 4영업일 기준가 매입 | 환매 방법 | · 17시 이전 : 4영업일 기준가 9영업일 지급 · 17시 경과 후 : 5영업일 기준가 10영업일 지급 |
| 기준가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 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 가.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및 아세안(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그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나.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른재형저축으로서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재형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4. 이의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중 “수익자에 대한 과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출생년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다른운용 자산규모 | |
| 김성준 | 1979 | VP | 56개 | 9,537억 | - 2014년 01월 ~ 現 삼성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 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 경력과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해외위탁운용역

| | |
|---------|--|
| 펀드매니저 | Alan Richardson (2017. 3.15 기준) |
| 과거 운용경력 | - 1997 Barings Asset Management(Asia) ASEAN 주식 운용역 |

4. 투자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도별 수익률 추이

| 기간 | 최근 1년차 (16.03.10~ 17.03.09) | 최근 2년차 (15.03.10~ 16.03.09) | 최근 3년차 (14.03.10~ 15.03.09) | 최근 4년차 (13.03.10~ 14.03.09) | 최근 5년차 |
|--------|-----------------------------------|-----------------------------------|-----------------------------------|-----------------------------------|--------|
| 집합투자기구 | 11.10 % | 1.19 % | 9.33 % | -3.73 % | |
| 비교지수 | -0.55 % | -8.86 % | 5.41 % | -10.73 % | |

주1) 비교지수 : 콜금리*5%+MSCI AC South East Asia USD Index (KRW)*9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및 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해외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국가위험 | 투자신탁은 아세안 국가 주식시장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시장 및 증권거래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 불능 및 지연 등의 가능성이 있으며, 상하한폭 변경 등 갖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의 적시성 및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투자자금 송환불능위험 | 일부 나라는 펀드의 배당소득,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또는 증권의 매매 절차와 관련하여 그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이러한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환율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이후 환율변동으로 인한 급격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을 초래 |

| | |
|------------|---|
| 환율변동위험 | <p>할 수 있습니다.</p> <p>심지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통화의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할 경우 오히려 투자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투자 증권의 가격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통화가치의 하락이 펀드의 손실폭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p> <p>※ 특정국가의 환율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 현재 투자대상국가중 일부 국가의 경우 대달러 환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변동하는 관리 변동환율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해당국가의 통화 당국이 통화정책을 변경하여 일일 변동폭을 확대하거나 완전 변동환율제로 변경하는 등 통화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
| 환매연기위험 | <p>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오퍼레이션 위험 | <p>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p> |
| 정산위험 | <p>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아세안 시장의 매매와 정산관행이 선진국 시장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산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투자이익의 실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매매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의 정산 불가 리스크를 질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그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최선의 판단으로 합리적인 지급금의 양도 장소를 정하고, 신탁업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판단으로 시장관행인 결제유형을 택하여 그 거래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거래의 정산이 실패될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책임운용전문인력이나 신탁업자는 그러한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에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p> |
| 투자신탁 해지 위험 | <p>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p> |

주)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 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운용 할 계획입니다.
- 위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위험에 노출되므로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동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기준표(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 등급 | 1(고위험) | 2 | 3 | 4 | 5 | 6(저위험) |
|------|--------|-------|-------|-------|------|--------|
| 표준편차 | 25%초과 | 25%이하 | 15%이하 | 10%이하 | 5%이하 | 0.5%이하 |

주1)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동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

주2)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자는 **9.27%** 입니다.

주3)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 해당사항 없음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가.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나.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다. 재형저축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및 요건

| | |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 |
|----|----------------------------------|

| | |
|----------------|---|
| 가입 자격 | <p>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가입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p> <p>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p> <p>② 위의 ①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p> <p>*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국세청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p> <p>* 펀드 가입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보며, 그 전일까지는 비과세 적용 → 상기 통보 이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추가입금이 금지될 수 있으며, 다른 펀드(MMF 등)로 이동되거나 해지될 수 있음</p> |
| 가입 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투자신탁을 매수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저축 계약 기간 |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지, 환매 및 제3자에게의 양도가 없을 것 다만,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7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3년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 가능(최대 10년).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 가입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함) |
| 세제 혜택 | 계약기간 7년 유지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다만, 최초 계약기간 7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해지, 양도하거나 환매시 연장한 기간 및 연장 이전 7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재형저축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1.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 배당소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10)가 부과됨 |

| |
|---|
| <p>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환매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다만 저축자의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특별해지)</p> <p>감면 세액 추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p>(특별해지하려는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p> |
|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재형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2) 전환절차 및 방법

1. 이연판매보수(CDSC) 적용기준 및 내용

- 해당사항없음

2.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 주소)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dart.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www.samsung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www.samsungfund.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칭 | 펀드코드 |
|------------------------|-------|
| 삼성재형아세안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 AG067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부의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 예정금액

10조좌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 |
|-----------------|--|
| 모집기간 | 별도의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
|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 특이사항 없음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칭 | 펀드코드 |
|------------------------|-------|
| 삼성재형아세안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 AG067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 변경 사항 |
|-------------|--|
| 2013. 3. 6 | 최초 설정 |
| 2014. 8. 11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 운용역 변경 (홍의석 → 김성준) |
| 2015. 4. 24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 |
| 2016. 5. 16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 |
| 2016. 6. 7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삼성아시아Top-Tier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삼성아시아Top-Tier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추가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 사 명 | 삼성자산운용(주) |
| 주 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 (대표전화 : 080-377-4777, 콜센터 : 080-377-4777) |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1) 업무 위탁 운용사 및 업무 위탁 범위

| 해당 펀드 | 위탁운용사 | 업무위탁범위 |
|------------------|----------------|------------------------------|
| 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 운용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운용지시업무 |

(2) 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 | |
|--------|---|
| 위탁운용사명 |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
| 설립일 | 2007년 11월 01일 |
| 회사주소 | Suite 4513-14, 45th Floor, 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No.8 Finance street, Central, Hong Kong 전화번호 : 852-2115 8722 팩 스 : 852-2115-8720 |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 성명 | 출생년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다른운용 자산규모 | |
| 김성준 | 1979 | VP | 56개 | 9,537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02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경영 졸업 - 2012년 05월 Duke MBA - 2004년 02월 ~ 2006년 07월 KT 전략기획팀 - 2006년 08월 ~ 2010년 07월 KB국민은행 스마트뱅킹사업부 - 2012년 08월 ~ 2013년 12월 삼성자산운용 글로벌마케팅팀 - 2014년 01월 ~ 現 삼성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 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두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운용역 | 운용 기간 |
|-----|--------------------------|
| 홍의석 | 2013. 3. 6 ~ 2014. 8. 10 |
| 김성준 | 2014. 8. 11 ~ 현재 |

주1) 2017. 3. 15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해외위탁운용역

| | |
|---------|---|
| 펀드매니저 | Alan Richardson (2017. 3.15 기준) |
| 과거 운용경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 Barings Asset Management(Asia) ASEAN 주식 운용역 - 2006 RCM Allianz Global Investors ASEAN 주식 운용역 - 2008 Samsung Asset Management(Singapore) Pte. Ltd. - 2013 Samsung Asset Management(Hong Kong) Limited, ASEAN 지역운용역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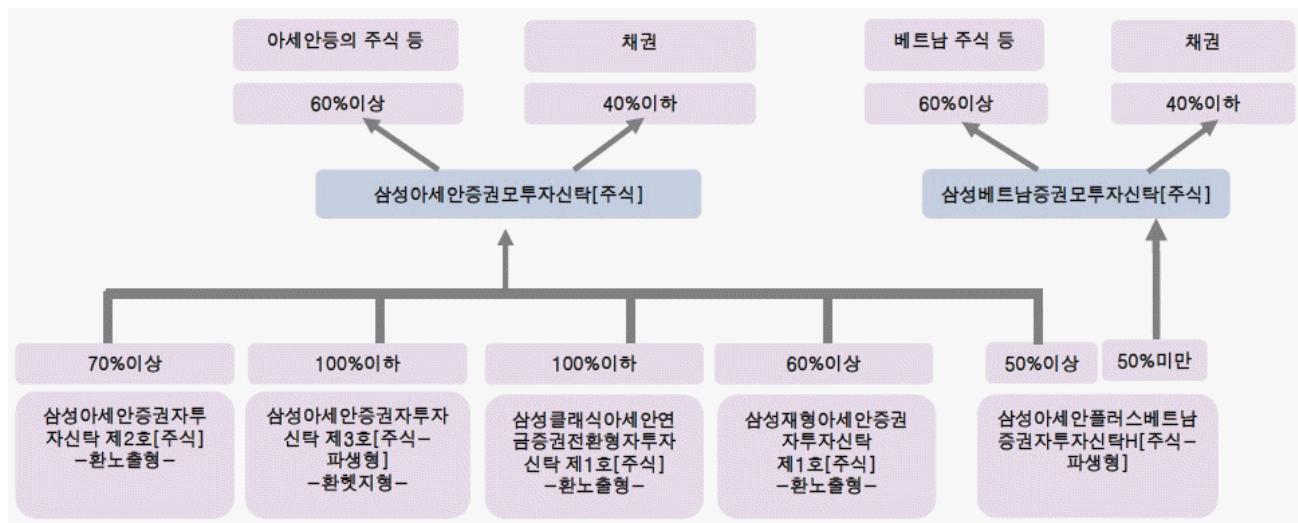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다. 모자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그림은 이 투자신탁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또는 그 모투자신탁을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모투자신탁명 |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 |
|----------------------|------------------|---|
| | 주요투자대상 | 해외 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 어음 40% 이하 |
| 삼성아세안증권모 투자신탁[주식] |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아세안등(베트남 및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말한다)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의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 |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p>1) 기본 운용전략</p> <p>① <u>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주식과 베트남주식에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통한 장기 투자함으로써 고위험 대비 고수익을 추구합니다.</u></p> <p>② 이 투자신탁의 해외 자산운용은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 공사 [Samsung Asset Management(Hong Kong)Limited]에 위탁운 용하고 국내채권 및 유동성이 삼성자산운용(주)가 직접 운용합 니다.</p> <p>③ 아세안 국가(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 핀 등) 및 베트남에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한 국가에 집중 투자 하여 나타날 수 있는 비체계적위험을 감소시키는 국제분산투자 효과를 추구합니다. 또한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의 투자는 시장의 상황에 따른 전략적 배분을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p> <p>2) 국가별 배분전략 - 국가별 주식투자비율</p> <p>- 베트남주식시장에 신탁자산의 20%이하를 나머지 자산은 아 세안 국가에 분산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 비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3)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 될 예정입니다.</p> <p>- 비교지수 : MSCI AC South East Asia USD Index(KRW) * 100%</p> |
| | 등록신청서 제출일 | 2016.12. 6 |

라.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가.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및 아세안(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그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자산에의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른재형저축으로서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재형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4. 이의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중 “수익자에 대한 과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1) 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60% 이상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되,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주식에 전략적 배분을 통하여 투자하는 증권 투자신탁[주식] |
| 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
| 3)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10% 이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단,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두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3)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3)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
|---|
| ※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3)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아래의 투자대상은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을 기재한 것으로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또는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조건 |
|-------|--------|---|
| 해외 주식 | 60% 이상 |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으로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주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법 제4조제8항에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발행한 것 |
| 채권 | 40% 이하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또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으로 제한한다) |
| 어음 | 40% 이하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증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2-이상인 것 |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구분 | 투자제한의 내용 | 예외 |
|--------------|---|----|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p> | |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

아래의 투자제한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중 일부만 기재한 것으로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에 대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또는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구분 | 투자제한의 내용 | 예외 |
|--------------|---|------------------|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p> | |
| 동일종목투자 |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 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p>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 |
|--------|--|---------------|
| | <p>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 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p> | |
| 파생상품매매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1)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운용 할 계획입니다.
- (2)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자산에의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1) 비교지수: MSCI AC South East Asia USD Index(KRW) × 95% + 콜금리 × 5%
 - 2) 선정사유: MSCI AC South East Asia USD Index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이 산출 및 발표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수로 본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과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 (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모두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등에 대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두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명 | 주요 투자 전략 |
|------------------|--|
| 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p>1) 기본 운용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주식과 베트남주식에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통한 장기 투자함으로써 고위험 대비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의 해외 자산운용은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Samsung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에 위탁운용하고 국내채권 및 유동성을 삼성자산운용(주)가 직접 운용합니다. ③ 아세안 국가(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및 베트남에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한 국가에 집중 투자하여 나타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국제분산투자효과를 추구합니다. 또한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의 투자는 시장의 상황에 따른 전략적 배분을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p>2) 국가별 배분전략 - 국가별 주식투자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주식시장에 신탁자산의 20%이하를 나머지 자산은 아세안 국가에 분산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 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3)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지수 : MSCI AC South East Asia USD Index(KRW) * 100% |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 구분 | 대상 국가 | 내용설명 |
|--------|-----------|--|
| 이미징아시아 | INDONESI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 Aceh 지구 분리주의자와의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내전의 위험이 많이 감소하여 정치적 안정을 확보 중 - '09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동남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 - 인구: 2.53억 명(인구증가율: 0.95%, 평균기대수명: 72.17년) ○ 시장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보수적인 재정정책으로 낮은 수준의 GDP 대비 부채 비율(25% 미만) 및 재정적자(2% 미만), 역사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 1인당 GDP(PPP): USD 10,200('14년) - '12년부터 소비재 수출 호황이 끝남에 따라 경제성장둔화 - '11년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됨(페치 및 무디스사) - 특이사항: 이슬람신자가 전 국민의 86%로 금요일 정오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종교 거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중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거래소: Indonesia Stock Exchange(ISX) - 예탁기관: PT Kustodian Sentral Efek Indonesia(KSEI: 주요예탁기관), Bank Indonesia(국채 및 은행채) - 결제제도: 거래소는 T+3/채권은 T+2/장외거래는 협의에 따름 |
| MALAYSI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57년 말라야연방으로 독립, '63년 싱가포르, 사바, 사라왁을 합쳐 말레이시아가 되었다가 '65년 싱가포르가 탈퇴하여 현재 국가에 이른 입헌군주국 - 인구: 3천만 명(인구증가율: 1.47%, 평균기대수명: 74.52년) ○ 시장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 천연가스, 팜유 및 천연고무 등 1차산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 '09년 취임한 나지브 라자크 총리는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등의 개혁정책 추진 중 - 높은 외환보유고와 견조한 금융부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09년 GDP 성장률이 1.9% 하락에 그친 데 이어 '13년, '14년 각각 4.7%, 5.9%대 성장. 1인당 GDP(PPP): USD 24,500 ('14년) ○ 거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통화: Ringgit (MYR) - 대표거래소: Bursa Malaysia Berhad (BM) - 예탁기관: Bursa Malaysia Depository Sdn Bhd - 결제제도: 거래소는 T+2(매도), T+3(매수)/상장채권은 T+3, 비상장채권은 T+2(조정가능) - 외국인 투자제한: '09년 지분소유 한도 49%에서 70%로 상향 조정 |
| PHILIPPIN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 인구: 1억 명(인구증가율: 1.81%, 평균기대수명: 72.48년) ○ 시장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내수 및 수출 증가로 7.6% 성장 후, 인프라 투자 등 정부지출 감소 등으로 '11년 3.7%로 둔화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여파를 잘 견뎌 옴. '12~'14년 6~7%대 성장세 기록 1인당 GDP(PPP): USD 7,000('14년) - '10년 당선된 Aquino 정부는 '11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50% 이하로 축소하는 한편 투자증대와 세수 확대를 위한 조세 개혁을 강조 ○ 거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거래소: Philippine Stock Exchange(PSE), Philippine Dealing & Exchange Corporation(PDEX) - 예탁기관: Philippine Depository & Trust Corporation(PDTC: 주식), Registry of Scripless Securities(ROSS) - 결제제도: 거래소는 T+3/채권은 T+1 및 당일결제 - 외국인 투자제한: 40% 소유 제한 |
| SINGAPOR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 인구: 556만명(인구증가율: 1.92%, 평균기대수명: 84.38년) |

| | |
|----------|---|
| | <p>○ 시장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대외 개방형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 부국으로 1인당 GDP 수준이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음. '13년, '14년 GDP 성장률 4.4%, 2.9% 기록. 1인당 GDP(PPP): USD 81,300('14년) - 아시아 금융 및 의료 분야 등 High-Tech 혁신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p>○ 거래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거래소: Singapore Exchange Limited(SGX), Stock Exchange of Singapore Dealing and Automated Quotation System SESDAQ), Central Limit Order Book(CLOB: 장외거래시장), SGX Xtranan(ETF 전용 거래소) - 예탁기관: Central Depository (Pte) Limited(CDP),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MAS: 국채 예탁) - 결제제도: 국채 및 상장유가증권 T+3/단기채은 T+1 - 외국인 투자제한: 8개 기업에 대한 소유 제한만 존재 →70% - GK Goh Holdings, Kim Eng Holdings (2개사) →49% - SNP, Singapore Reinsurance, Total Access Communication Public |
| THAILAND | <p>○ 개요</p> <p>15년 CIA WORLD FACTBOOK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헌군주국(1238년 건국) - 인구: 6천 7백만 명(인구증가율: 0.35%, 평균기대수명: 74.18년) <p>○ 시장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었던 수출이 강세로 돌아서며 '10년 7.8% GDP 성장율 기록. '11년 대규모 대홍수 피해로 0.1% 성장에 그침. 14년 5월 쿠데타 이후로 관광이 6~7% 감소했지만 회복세. 1인당 GDP(PPP): USD 14,400('14년) - 산업별 GDP 구성비: 서비스업(55.8%), 제조업(32.6%), 농업(11.6%) <p>○ 거래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통화: Thai baht (THB) - 거래소: Stock Exchange of Thailand(SET), Market for Alternative Investments(MAI), Bond Electronic Exchange(BEX), Thailand Futures Exchange(TFEX) - 예탁기관: Thailand Securities Depository Co. Ltd.(TSD) - 결제제도: T+3(SET 및 MAI 상장주식 등), T+2(국채) - 외국인 투자제한: 49% 보유제한, 상업은행 및 일부 금융기관은 25% |
| VIETNAM | <p>○ 개요</p> <p>15년 CIA WORLD FACTBOOK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 Doi moi 정책에 따라 수출산업 위주 경쟁체제 구축. - 인적자원 부국으로 평균 연령이 29.2세(남성 28.1세, 여성 30.2세)로 젊은 산업인력 보유 - 인구: 9천 3백만 명(인구증가율: 1.0%, 평균기대수명: 72.91년) <p>○ 시장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GDP(PPP): USD 5,600('14년) - 경제성장 중심의 정부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낮은 수준의 외환 보유고 |

| | |
|--|---|
| | <p>○ 거래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거래소: Ho Chi Minh Stock Exchange(HOSE), Securities Trading Center, Hanoi(HA-STC) - 예탁기관: Vietnam Securities Depository (VSD) - 결제제도: 거래소는 T+3/채권은 T+1/장외거래는 협의에 따름 - 외국인 투자제한: 일반적으로 49%, 별도로 유가증권 및 특정산업은 5%-30% 까지 보유 가능/배당 및 이자에 대하여 20% 과세(조세조약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

주) 상기의 국가 개요는 이 투자신탁재산(모투자신탁 포함)으로 투자 가능한 주요 국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상기에 열거한 국가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에 따라 상기에 열거된 국가라도 투자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에 열거되지 않은 국가에도 투자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의 국가개요는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작성일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 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국가개요의 내용이 실제 정보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작성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 구조

- 해당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및 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해외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p>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
|----------------------|--|

나. 특수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국가위험 | <p>투자신탁은 아세안 국가 주식시장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투자국가 중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p> <p>아울러, 증권시장 및 증권거래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 불능 및 지연 등의 가능성이 있으며, 상하한폭 변경 등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의 적시성 및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p> |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 <p>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p> |
| 투자자금 송환불능위험 | <p>일부 나라는 펀드의 배당소득,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또는 증권의 매매 절차와 관련하여 그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이러한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
| 환율변동위험 | <p>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이후 환율변동으로 인한 급격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심지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통화의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할 경우 오히려 투자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투자 증권의 가격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통화가치의 하락이 펀드의 손실폭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p> <p>※ 특정국가의 환율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 현재 투자대상국가중 일부 국가의 경우 대달러 환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변동하는 관리 변동환율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해당국가의 통화 당국이 통화정책을 변경하여 일일 변동폭을 확대하거나 완전 변동환율제로 변경하는 등 통화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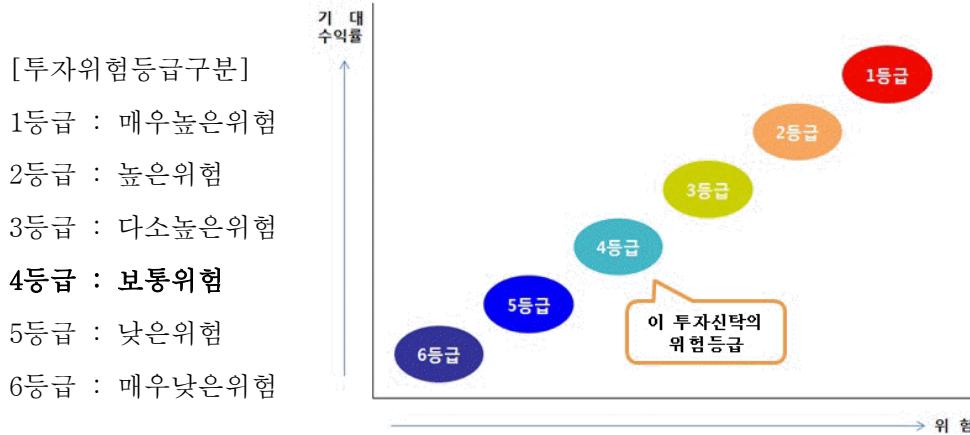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p>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p> |
| 유동성 위험 | <p>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

| | |
|------------|--|
| 환매연기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오퍼레이션 위험 |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
| 정산위험 |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아세안 시장의 매매와 정산관행이 선진국 시장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산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투자이익의 실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매매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의 정산 불가 리스크를 질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그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최선의 판단으로 합리적인 지급금의 양도 장소를 정하고, 신탁업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판단으로 시장관행인 결제유형을 택하여 그 거래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거래의 정산이 실패될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책임운용전문인력이나 신탁업자는 그러한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에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 투자신탁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운용 할 계획입니다.
- 위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위험에 노출되므로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동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기준표(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 등급 | 1(고위험) | 2 | 3 | 4 | 5 | 6(저위험) |
|------|--------|-------|-------|-------|------|--------|
| 표준편차 | 25%초과 | 25%이하 | 15%이하 | 10%이하 | 5%이하 | 0.5%이하 |

- 주1)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동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
- 주2)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9.27%** 입니다.
- 주3)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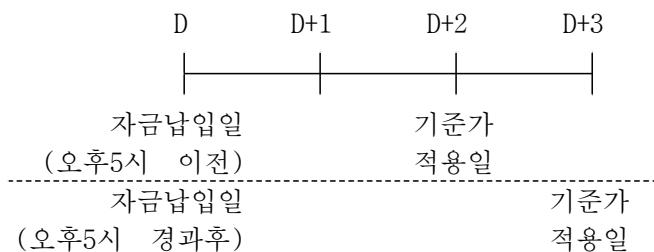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해당사항 없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2) **오후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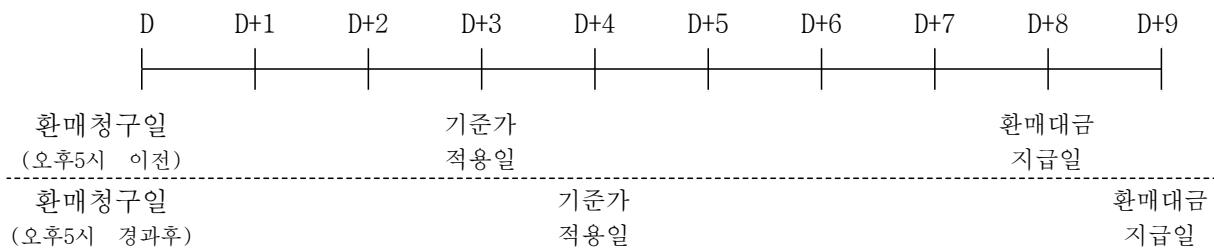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3)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종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7영업일 전일 (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령 제257조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청받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4) 1) 내지 3)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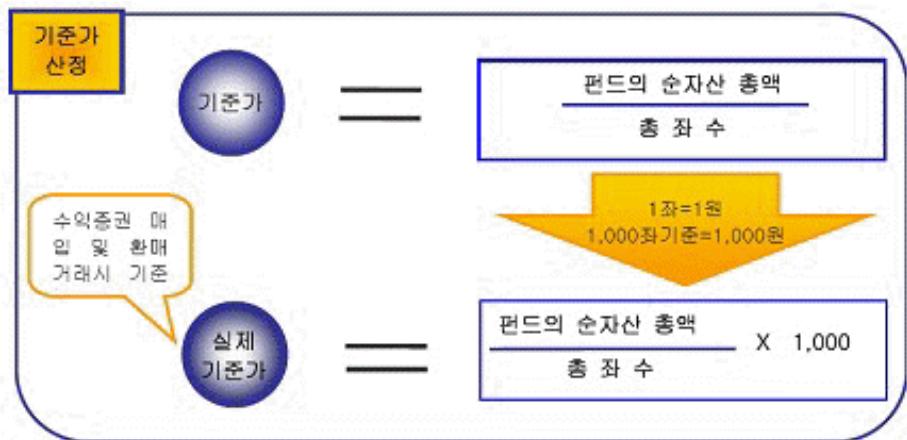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종류간 기준이 상이한 이유 | 해당사항 없음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
|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
| 공시방법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비상장수익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
| 외화표시수익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외국 증권 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 수익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로 평가 |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2)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명칭 | 수수료율 | | | |
|------------------------|-------------|-------------|-------|-------|
| |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판매수수료 | 전환수수료 |
| 삼성재형아세안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 - | - | - | - |
| 부과기준 | 매입시 | 판매시 | 판매시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이 투자신탁의 관련보수등

| 명칭 (클래스) | 지급비율(연간,%) | | | | | | | |
|--|------------------|------------|------------|--------------------|----------|--------------|--|------------|
| | 집합 투자업자 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 기타 비용 | 총 보수 · 비용 |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 증권 거래비용 |
| 삼성재형 아세안증 권자투자 신탁 제1 호[주식] | 0.59 | 0.50 | 0.05 | - | 0.0539 | 1.1939 | 1.1939 | 2.0005 |
| 지급시기 |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 | 사유 발생시 | | - | - | 사유 발생시 | |

주1) 총보수 · 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 원)

| 구분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 119,390 | 376,377 | 659,705 | 1,501,675 |

주)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정율식으로 인하되는 판매회사 보수분은 미반영)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신탁 관련 비용

-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펀드내 자산의 평가·매매차익의 결산·분배금 유보로 인해 과세가 자동이월되면서, 환매 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른 재형저축으로서 이익분배금의 현금 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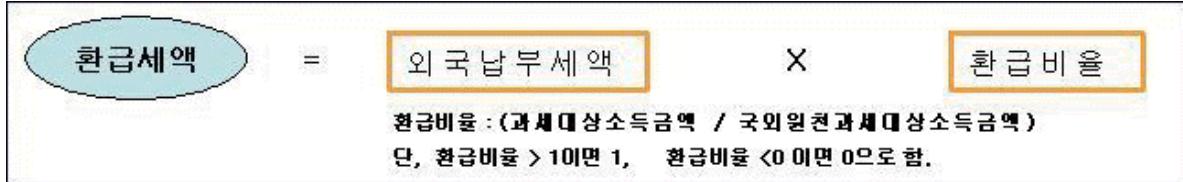
(4)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2)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3)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1)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3) 재형저축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및 요건

| | |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 |
|----|----------------------------------|

| | |
|--------|---|
| 가입자격 | <p>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가입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p> <p>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p> <p>② 위의 ①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p> <p>*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국세청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p> <p>* 펀드 가입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보며, 그 전일까지는 비과세 적용 → 상기 통보 이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추가입금이 금지될 수 있으며, 다른 펀드(MMF 등)로 이동되거나 해지될 수 있음</p> |
| 가입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투자신탁을 매수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저축계약기간 |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지, 환매 및 제3자에게의 양도가 없을 것 다만,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7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3년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 가능(최대 10년).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함) |
| 세제혜택 | <p>계약기간 7년 유지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다만, 최초 계약기간 7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해지, 양도하거나 환매시 연장한 기간 및 연장 이전 7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p> <p>* 다만, 재형저축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1.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 배당소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10)가 부과됨</p> |

| | |
|--|--|
| 감면 세액 추징 | <p>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환매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다만 저축자의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특별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p>(특별해지하려는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p> |
|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재형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이 300억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24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아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대차대조표 | | | |
|----------|--------------------|--------------------|--------------------|
| 항목 | 4기 (2017. 3. 5) | 3기 (2016. 3. 5) | 2기 (2015. 3. 5) |
| 자산총계 | 6,357 | 5,918 | 4,917 |
| 운용자산 | 6,354 | 5,889 | 4,870 |
| 증권 | 6,101 | 5,651 | 4,664 |
| 파생상품 | 0 | 0 | 0 |
| 부동산/설물자산 | 0 | 0 | 0 |
| 현금 및 예치금 | 252 | 238 | 206 |
| 기타운용자산 | 0 | 0 | 0 |
| 기타자산 | 4 | 29 | 47 |
| 부채총계 | 20 | 44 | 60 |
| 운용부채 | 0 | 0 | 0 |
| 기타부채 | 20 | 44 | 60 |
| 자본총계 | 6,337 | 5,874 | 4,857 |
| 원본 | 5,719 | 5,770 | 4,616 |
| 수익조정금 | -9 | -40 | 19 |
| 이익잉여금 | 626 | 145 | 222 |

(단위 : 백만원)

| 손익계산서 | | | |
|------------|----------------------------|----------------------------|----------------------------|
| 항목 | 4기 (2016. 3~2017. 3. 5) | 3기 (2015. 3~2016. 3. 5) | 2기 (2014. 3~2015. 3. 5) |
| 운용수익 | 696 | 203 | 408 |
| 이자수익 | 2 | 3 | 3 |
| 배당수익 | 0 | 0 | 531 |
| 매매/평가차익(손) | 693 | 200 | -126 |
| 기타수익 | 0 | 0 | 0 |

| 항목 | 4기 (2016. 3. 6~2017. 3. 5) | 3기 (2015. 3. 6~2016. 3. 5) | 2기 (2014. 3. 6~2015. 3. 5) |
|---------|-------------------------------|-------------------------------|-------------------------------|
| 운용비용 | 69 | 59 | 47 |
| 관련회사 보수 | 69 | 58 | 47 |
| 매매수수료 | 0 | 0 | 0 |
| 기타비용 | 0 | 0 | 0 |
| 당기순이익 | 626 | 145 | 361 |
| 매매회전율 | - | - | - |

나.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 대차대조표 | | | |
|------------|--------------------|--------------------|--------------------|
| 항목 | 4기 (2017. 3. 5) | 3기 (2016. 3. 5) | 2기 (2015. 3. 5) |
| 자산총계 | 6,357 | 5,918 | 4,917 |
| 운용자산 | 6,354 | 5,889 | 4,870 |
| 유가증권 | 6,101 | 5,651 | 4,664 |
| 지분증권 | 0 | 0 | 0 |
| 채무증권 | 0 | 0 | 0 |
| 수익증권 | 6,101 | 5,651 | 4,664 |
| 파생상품 | 0 | 0 | 0 |
| 현금및 예치금 | 252 | 238 | 206 |
| 현금및 현금성자산 | 252 | 238 | 206 |
| 기타운용자산 | 0 | 0 | 0 |
| 기타자산 | 4 | 29 | 47 |
|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 4 | 29 | 47 |
| 미수이자 | 0 | 0 | 0 |
| 미수배당금 | 0 | 0 | 0 |
| 부채총계 | 20 | 44 | 60 |
| 기타부채 | 20 | 44 | 60 |
| 기타미지급금 | 4 | 29 | 47 |
| 미지급보수 | 17 | 15 | 13 |
| 기타미지급비용 | 0 | 0 | 0 |
| 미지급분배금 | 0 | 0 | 0 |
| 자본총계 | 6,336 | 5,874 | 4,857 |
| 원본 | 5,719 | 5,770 | 4,616 |

| 항목 | 4기 (2017. 3. 5) | 3기 (2016. 3. 5) | 2기 (2015. 3. 5) |
|----------|--------------------|--------------------|--------------------|
| 이익잉여금 | 617 | 105 | 241 |
| 수익조정금 | -9 | -40 | 19 |
| 이월이익잉여금 | 0 | 0 | -139 |
| 당기순이익 | 626 | 145 | 361 |
| 부채및 자본총계 | 6,357 | 5,918 | 4,917 |
| 총좌수 | 5,719 | 5,770 | 4,616 |
| 기준가격 | 1,108 | 1,018 | 1,052 |

다.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손익계산서 | | | |
|----------|-------------------------------|-------------------------------|-------------------------------|
| 항목 | 4기 (2016. 3. 6~2017. 3. 5) | 3기 (2015. 3. 6~2016. 3. 5) | 2기 (2014. 3. 6~2015. 3. 5) |
| 운용수익(손실) | 696 | 203 | 408 |
| 투자수익 | 2 | 3 | 534 |
| 이자수익 | 2 | 3 | 3 |
| 배당수익 | 0 | 0 | 531 |
| 기타수익 | 0 | 0 | 0 |
| 매매차익 | 88 | 6 | 57 |
| 수익증권매매이익 | 88 | 6 | 57 |
| 매매차손 | -1 | -27 | -6 |
| 수익증권매매손실 | -1 | -27 | -6 |
| 평가손익 | 606 | 221 | -177 |
| 수익증권평가손익 | 606 | 221 | -177 |
| 운용비용 | 69 | 59 | 47 |
| 운용수수료 | 36 | 30 | 24 |
| 수탁수수료 | 3 | 3 | 2 |
| 판매수수료 | 30 | 26 | 21 |
| 기타비용 | 0 | 0 | 0 |
| 당기순이익 | 626 | 145 | 361 |
| 좌당순이익 | 0.11 | 0.03 | 0.08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억화, 억원)

| 구분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삼성재형아세 안증권자투자 신탁 제1호[주 식] | 2016.3.6 ~2017.3.5 | 58 | 58 | 16 | 16 | 16 | 16 | 57 | 57 |
| | 2016.3.6 ~2016.9.5 | 58 | 58 | 9 | 9 | 10 | 10 | 57 | 57 |
| | 2015.3.6 ~2016.3.5 | 49 | 49 | 20 | 20 | 11 | 11 | 58 | 58 |
| | 2014.3.6 ~2015.3.5 | 36 | 36 | 24 | 24 | 13 | 13 | 46 | 46 |
| | 2013.3.6 ~2014.3.5 | 1 | 1 | 43 | 43 | 7 | 7 | 36 | 36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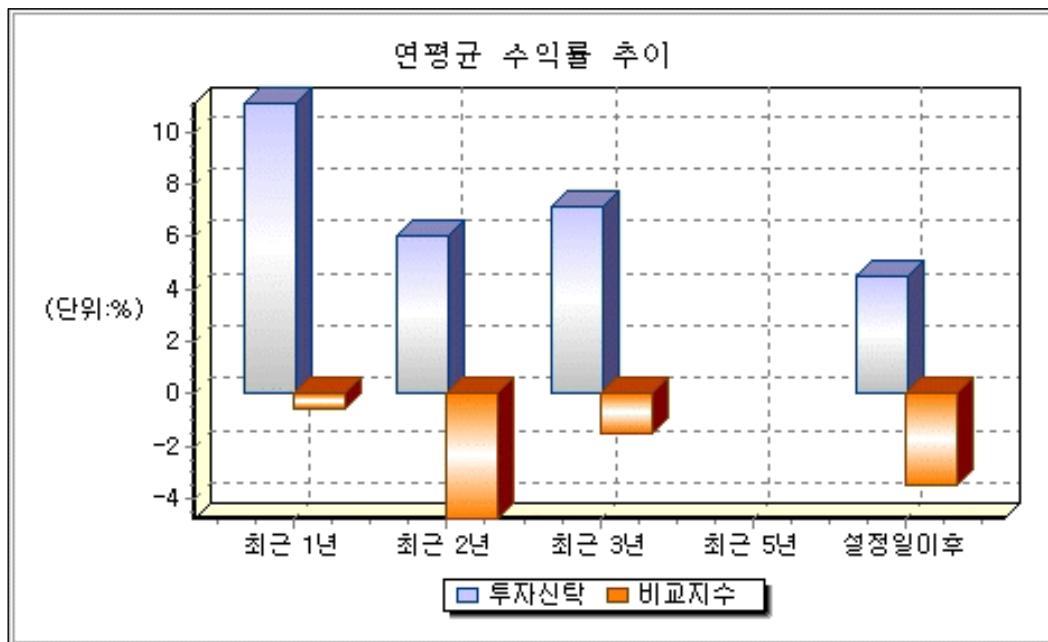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 연도 | 최근 1년 (16.03.10 ~17.03.09) | 최근 2년 (15.03.10 ~17.03.09) | 최근 3년 (14.03.10 ~17.03.09) | 최근 5년 | 설정일이후 (13.03.06 ~17.03.09) |
|------|----------------------------------|----------------------------------|----------------------------------|-------|----------------------------------|
| 투자신탁 | 11.10 % | 6.02 % | 7.11 % | | 4.50 % |
| 비교지수 | -0.55 % | -4.79 % | -1.51 % | | -3.51 % |

주1) 비교지수 : 콜금리*5%+MSCI AC South East Asia USD Index (KRW)*9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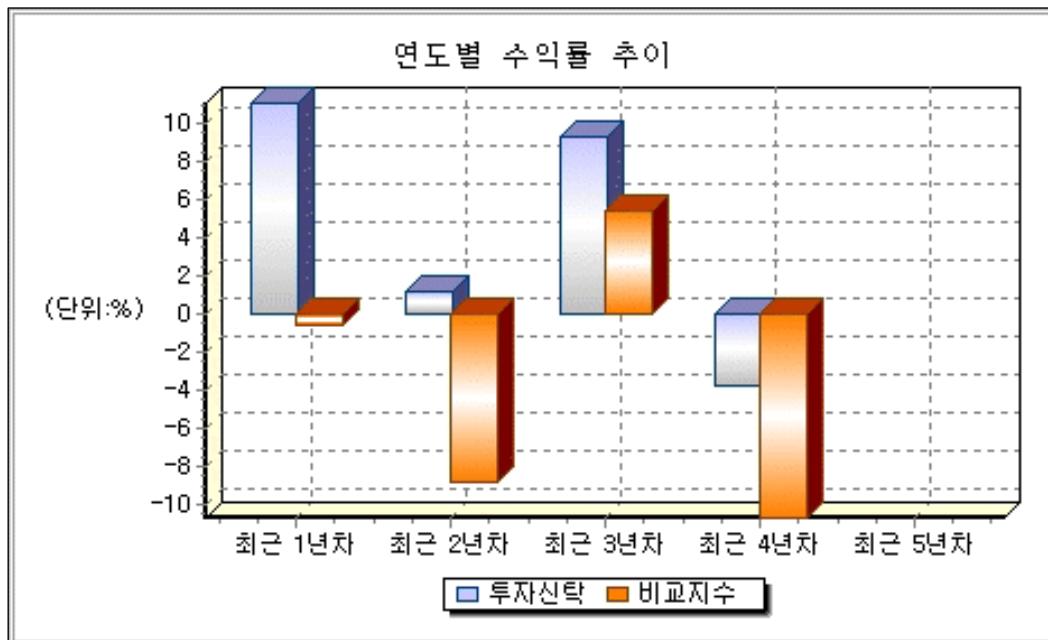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 연도 | 최근 1년차 (16.03.10 ~17.03.09) | 최근 2년차 (15.03.10 ~16.03.09) | 최근 3년차 (14.03.10 ~15.03.09) | 최근 4년차 (13.03.10 ~14.03.09) | 최근 5년차 |
|------|-----------------------------------|-----------------------------------|-----------------------------------|-----------------------------------|--------|
| 투자신탁 | 11.10 % | 1.19 % | 9.33 % | -3.73 % | |
| 비교지수 | -0.55 % | -8.86 % | 5.41 % | -10.73 % | |

주1) 비교지수 : 콜금리*5%+MSCI AC South East Asia USD Index (KRW)*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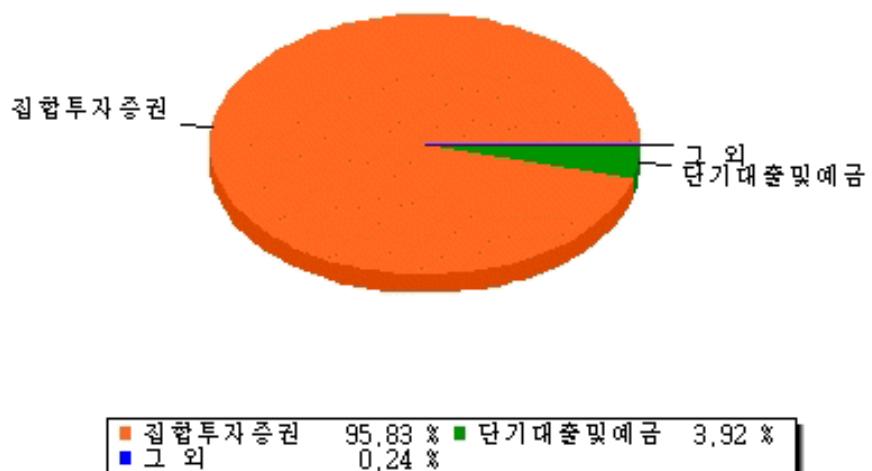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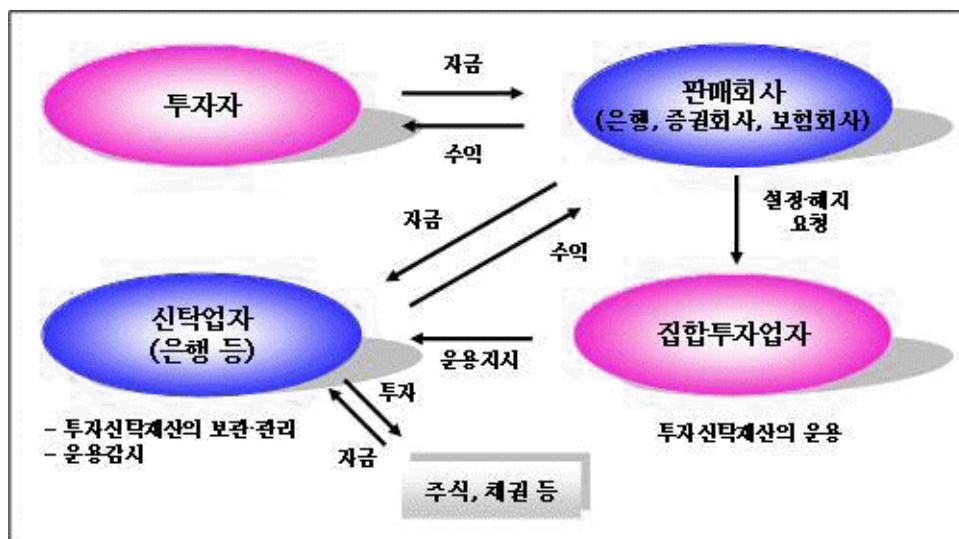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6.12.31 기준, 억원)

| 통화 | 증권 |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 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 총액 |
|-----|----|----|----|----------|----------|------|----|-----|-------|----|------------|----|-------|
| | 주식 | 채권 | 여음 | 집합 투자 증권 | 파생 결합 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 자산 | 기타 | | | |
| KRW | 0 | 0 | 0 | 60 | 0 | 0 | 0 | 0 | 0 | 0 | 2 | 0 | 62 |
| 합계 | 0 | 0 | 0 | 60 | 0 | 0 | 0 | 0 | 0 | 0 | 2 | 0 | 62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 | |
|----------|--|
| 회사명 | 삼성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 (연락처 : 080-377-4777, http://www.samsungfund.com) |
| 회사 연혁 | <p>1998.09 삼성생명투신운용설립 (납입자본금 300억원)</p> <p>1999.12 舊 삼성투신운용 흡수 합병(납입자본금 632억)</p> <p>2000.03 자본금 300억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932억)</p> <p>2000.03 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에서 삼성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p> <p>2001.01 업계 수탁고 1위 달성</p> <p>2001.04 수탁고 20조 달성</p> <p>2001.11 연기금 투자풀 주간 운용사 선정</p> <p>2002.01 국내 최초 상장지수투자신탁 KODEX200 증권거래소 상장</p> <p>2003.01 관리자산 50조원</p> <p>2004.12 관리자산 60조원</p> <p>2005.04 ABF 펀드 설정(아시아채권펀드의 한국내 운용사로 선정)</p> <p>2005.11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재선정</p> <p>2008.03 관리자산 74조원</p> <p>2008.04 홍콩 현지법인 영업인가</p> <p>2008.09 싱가포르 현지법인 영업인가</p> <p>2008.12 대한민국 증권대상 수상(서울경제신문 주최)</p> |

| | |
|--------|--|
| 회사 연혁 | 2010.04 삼성투자신탁운용에서 삼성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
| | 2011.05 Asian Investor지 선정, 한국 최우수 운용사 |
| | 2013.10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재선정 |
| | 2013.12 관리자산 127.4조원 달성 |
| | 2014.10 상해 리서치센터 설립 |
| | 2015.02 삼성생명 뉴욕법인 인수 |
| | 2015.02 홍콩거래소 최초 선물ETF "KODEX HIS Futures ETF/Futures RMB FX ETF" 상장 |
| | 2015.04 인도 릴라이언스캐피탈과 전략적 제휴 체결 |
| | 2015.07 노동부 산재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
| | 2015.10 미국 캐피탈그룹과 전략적 제휴 체결 |
| | 2015.11 중국ETF시장 진출을 위한 건신기금과의 전략적 제휴 체결 |
| | 2015.12 관리자산 200조 달성 |
| | 2015.12 삼성생명 런던법인 인수 |
| | 2016.04 미국 캐피탈그룹과 삼성 한국형 Target Date Fund 출시 |
| | 2016.04 유럽 로스차일드그룹과 전략적 제휴 체결 |
| 자본금 | 934.3억 |
| 주요주주현황 | 삼성생명보험(주)(100%) |

주) 산정 기준일은 2017.1.1일 입니다.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 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재무상태표

제 18(당)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17(전)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 과목 | 주석 | 당기말 | 전기말 |
|----------------|------------|-----------------|-----------------|
| 자산 | | | |
| I. 현금및현금성자산 | 6,30 | 7,382,890,851 | 15,493,952,901 |
| II.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7,31 | 58,284,789,869 | 20,093,800,626 |
| III. 매도가능금융자산 | 5,8,31 | 69,901,850,910 | 17,866,421,388 |
| IV. 대여금및수취채권 | 5,9,28,30 | 294,725,961,935 | 446,092,068,782 |
| V. 종속기업투자 | 10 | 68,257,950,536 | 4,216,655,340 |
| VI. 유형자산 | 11 | 745,978,496 | 2,029,053,905 |
| VII. 무형자산 | 12 | 12,686,860,503 | 12,541,612,114 |
| VIII. 이연법인세자산 | 27 | 2,019,996,136 | 1,589,587,029 |
| IX. 기타자산 | 13 | 1,638,258,394 | 1,439,783,254 |
| 자산총계 | | 515,644,537,630 | 521,362,935,339 |
| 부채 | | | |
| I. 예수부채 | 5,14,30 | 196,911,851,190 | 263,950,390,022 |
| II. 기타금융부채 | 5,15,28,30 | 20,063,635,406 | 15,775,440,188 |
| III. 충당부채 | 16 | 687,446,186 | 656,398,834 |
| IV. 순확정급여부채 | 17 | 1,001,293,373 | 231,293,327 |
| V. 당기법인세부채 | | 12,043,312,115 | 4,822,839,675 |
| VI. 기타부채 | 18 | 654,015,799 | 598,222,490 |
| 부채총계 | | 231,361,554,069 | 286,034,584,536 |
| 자본 | | | |
| I. 자본금 | 20 | 93,430,000,000 | 93,430,000,000 |
| II. 기타불입자본 | 20 | 51,087,628 | 6,967,728 |
|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 20 | (2,865,801,944) | (1,711,704,016) |
| IV. 이익잉여금 | 21 | 193,667,697,877 | 143,603,087,091 |
| 자본총계 | | 284,282,983,561 | 235,328,350,803 |
| 부채 및 자본총계 | | 515,644,537,630 | 521,362,935,339 |

포괄손익계산서

제18(당)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7(전)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 과목 | 주석 | 당기 | 전기 |
|-----------------------------|-------|-----------------|-----------------|
| I. 영업수익 | | | 137,718,791,043 |
| 1. 수수료수익 | 22,28 | 156,935,114,734 | 130,106,458,066 |
| 2. 유가증권평가 및 차분이익 | 22,26 | 758,573,280 | 93,800,626 |
| 3. 이자수익 | 22,26 | 5,280,608,377 | 7,456,543,847 |
| 4. 외환거래이익 | 22,26 | 200,687,850 | 61,988,504 |
| 5. 배당금수익 | 22,26 | 1,218,781,035 | - |
| II. 영업비용 | | 95,715,974,260 | 79,834,914,643 |
| 1. 수수료비용 | 23,28 | 17,058,283,352 | 10,559,315,429 |
| 2. 유가증권평가 및 차분손실 | 23,26 | 550,000,000 | - |
| 3. 이자비용 | 23,26 | 2,078,353,892 | 2,330,582,863 |
| 4. 외환거래손실 | 23,26 | 316,594,797 | 147,119,304 |
| 5. 판매비 | 24 | 5,756,837,164 | 6,119,645,832 |
| 6. 일반관리비 | 24,28 | 69,924,857,703 | 60,650,740,908 |
| 7. 기타비용 | 23 | 31,047,352 | 27,510,307 |
| III. 영업이익 | | 68,677,891,016 | 57,883,876,400 |
| IV. 종속기업관련손익 | | - | (668,842,475) |
| 1.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 10 | - | (1,073,416,188) |
| 2. 종속기업투자차분이익 | | - | 404,573,713 |
| V. 영업외손실 | | (693,530,809) | (2,839,891,257) |
| 1. 영업외수익 | 25 | 9,323,939 | 69,690,417 |
| 2. 영업외비용 | 25 | 702,854,748 | 2,909,581,674 |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67,984,360,207 | 54,375,142,668 |
| VII. 법인세비용 | 27 | 17,919,749,421 | 13,523,216,811 |
| VIII. 당기순이익 | | 50,064,610,786 | 40,851,925,857 |
| IX. 기타포괄손익 | | (1,154,097,928) | 389,982,910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574,658,787) | (143,001,226) |
|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7 | (758,125,045) | (188,655,969) |
|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27 | 183,466,258 | 45,654,74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579,439,141) | 532,984,136 |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27 | (427,259,073) | 704,286,987 |
|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27 | (337,172,511) | (1,141,690) |
| 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 27 | 184,992,443 | (170,161,161) |
| X. 당기총포괄이익 | | 48,910,512,858 | 41,241,908,767 |
| XI. 주당순이익 | 29 | 2,679 | 2,186 |
| 1. 기본주당순이익 | | | |

라. 운용자산 규모

(2017. 3. 9 현재/억화)

| 구분 | 증권 | | | | | MMF | 특별자산 | 부동산 | 혼합자산 | 총계 |
|-----|--------|--------|--------|--------|---------|--------|--------|-----|------|---------|
|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파생상품 | 재간접 | | | | | |
| 수탁고 | 86,405 | 12,243 | 87,508 | 91,092 | 216,979 | 83,096 | 10,494 | 224 | 0 | 588,041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업무 위탁회사의 주요 업무]

| 해당 펀드 | 위탁운용사 | 업무위탁범위 |
|-------------------------|----------------|------------------------------|
| 삼성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 운용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운용지시업무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 | |
|----------|--|
| 해외위탁운용사명 |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
| 설립일 | 2007년 11월 01일 |
| 회사주소 | Suite 4513-14, 45th Floor, 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No.8 Finance street, Central, Hong Kong 전화번호 : 852-2115 8722 팩스 : 852-2115-8720 |

(2) 위탁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위탁집합투자업자보수는 집합투자업자의 부담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위탁집합투자업자 보수의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및 위탁집합투자업자가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3) 업무위탁계약기간은 업무위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위탁집합투자업자를 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 개요

| | |
|----------------------|-------------------------------------|
| 회사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칠侪로 37 전화번호 : 1588-1770 |
|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www.hsbc.co.kr |

(2) 주요 업무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5)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6)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7)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8)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KAP) | 나이스피앤티아이(주) | KIS채권평가 | 에프앤자산평가(주)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삼환빌딩) 4층 TEL: 02-2251-1300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여의도동, 대하빌딩 4층) TEL:02-398-39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한국화재 보험협회빌딩) 4층 TEL:02-3215-141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 (인사동, 태화빌딩) 4층 TEL: 02-721-5300 |
|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www.koreabp.com | www.nicepni.com | www.bond.co.kr | www.fnpricing.com |

(2)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 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사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사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사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의사사항은 없습니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의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채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 내역서
-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수익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증권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투자신탁의 폐흡수 합병/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 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1) 영업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투자운용인력의 변경/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 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amsungfund.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10)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4)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 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 구분 | 증개회사의 선정기준 |
|------------|---|
| 증권의 거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항목 증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증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증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용어 | 내용 |
|---------------|---|
| 집합투자업자 | 2인 이상 투자자에게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신탁업자 | 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개방형(집합투자기구) |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
| 추가형(집합투자기구) |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금리스왑 |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매입· 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
| 보수 또는 총보수 | 투자신탁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선물환거래 |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
| 수익자총회 |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됩니다. 만약 이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
| 수탁고 |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
| 판매수수료 | 판매회사가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분할하여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용어 | 내용 |
|-------|--|
| |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
| 설정 |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
| 해지 |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 환매 |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 등에서는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환매수수료 |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
| 환해지 |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 통화로 증권 등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환해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